

특 정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영덕) —

2026. 5.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물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가사업소
내 용	

1.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하 함)」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에 따른 실시시기¹⁾와 점검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덕군 시설물 관리부서인 가사업소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공공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이행한 경우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1) 붙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4~6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의 규모와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그러나 영덕군 가사업소에서는 관리대상시설물 중 제3종 시설인 가과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반기마다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아래 [표 1]과 같이 2025년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표 1] 2026년 영덕군 시설물 안전점검 누락 현황 “생략”

2.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

하는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덕군 가사업소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추진중인 ‘★★★★★★★★ 확장공사’의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0○○. ○○. ○○.일 조립식 간이 흙막이의 조건부 적정 의견을 통보 받고도 안전관리계획을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하지 않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 확장공사 추진 현황 “생략”

그 결과 안전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해당 공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실한 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중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 CCC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영덕군 ○○○○○○ ○○○○○○ ○-○ ○○ 증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나과
내 용

영덕군 나과에서는 “영덕군 ○○○○○○ ○○○○○○ ○-○ ○○ 증설사업”을 20○
○. ○○. ○○. ●●●●●●(주) 대표자 ▽▽▽과 계약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자’)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다음 [표 2]와 같이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의 품질관리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억원 이상~1000억원, 연면적 3만~5만㎡ 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500억원, 연면적 5천~3만㎡ 이상		20㎡ 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억원 이상~100억원		"	초급1명 이상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종류 등을 규정하면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계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나과에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착공 시 시험시설(시험장비)을 설치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관리자(초급기술인 1명 이상)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영덕군 ○○○○○○ ○○○○○ ○-○ ○○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20○○. ○○. ○○. 착공신고서 제출 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품질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검토없이 착공계를 접수하였다.

또한 본 공사를 추진하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임에도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실 설치(시험장비 구비 포함)를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품질관리활동비 오반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의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의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시험관리관으로 이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나과에서는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품질관리활동비 초급기술자 인건비 〇〇〇천 원을 과다 계상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공사현장 관리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제155조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시공사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토록 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덕군 나과에서는 “영덕군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중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업장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근로자의 작업하는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게 하고, 반입된 자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배수로 내 쓰레기 및 건설 폐자재를 방치하고 화재 부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반입된 자재를 관리하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1] 현장 지적사항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 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주의 처분하시고,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영덕 ◀◀◀◀(▷▷▷▷▷ ▷▷▷▷, ♡♡♡♡♡)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다과
내 용	

영덕군 다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영덕군 건축공사 추진 현황 “생략”

1. 설계용역 평가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설계용역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설계의 설계용역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에서는 “영덕 ◀◀◀◀(▷▷▷▷▷ ▷▷ ▷▷▷▷, ♡♡♡♡♡) 건립사업”의 설계용역비가 ◎◎◎백만원으로 설계용역 평가 대상(2021.1.1. 기준 210백만 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용역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설계의 품질, 공기 및 비용관리 등을 평가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유사 공사 발주 시 본 사업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품질을 개선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법」상 취지를 저해하였다.

2. 설계의도 구현 미이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등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고, 건축물 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설계자가 해당 업무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현장 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 시부터 설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영덕군에서는 “영덕 ◀◀◀◀(▷▷▷▷▷ ▷▷▷▷, ♡♡♡♡♡)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의도 구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3. 추락 및 낙하물 등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3조·제14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등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시 시공자로 하여금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정리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망 및 안전난간 등의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작업 공간 및 비계 하부 주변 정비 미흡, 계단 난간 설치 부적정,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부적정, 계단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이동식 비계 전도방지시설 미설치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음에도 영덕군에서는 이를 방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그림 1] 영덕군 건축공사 안전관련 부적정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평가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